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3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구단103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3.
판 결 선 고	2020. 1. 22.

주 문

1.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55,372,270원(가산세 89,758,240원 포함), 지방교육세 41,881,080원(가산세 5,319,6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0,940,540원(가산세 2,659,84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30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B를 신축하여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 8. 11. 피고 측으로부터 위 리조트 소재지인 [redacted]시 C 외 6필지 토지 17,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에 따라 감면됨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취득세 비과세 · 감면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감면확인서'라 한다) 및 취득세 납부세액이 0원으로 기재된 영수필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원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일인 2016. 9. 21.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취득세 455,372,270원, 지방교육세 41,881,080원, 농어촌특별세 20,940,54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0.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 이 사건 처분의 처분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30

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설령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의 감면확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만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분은 원고에게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9.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019. 9. 2.까지 5년간 분할납부하는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착공신고 전까지 매매대금의 1/2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특약하였다(계약서 제8조).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토지의 대금 절반을 자진납부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 측은 2015. 11. 24. "매매대금의 1/2 이상을 낸 경우로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잔금에 대한 채권확보장치를 마련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이라도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중 [별표] 영구시설물 축조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납부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2016. 3. 31.까지 잔금납부를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2) [redacted]지사는 2016. 7. 21. 이 사건 토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였고, 원고는 2016. 7. 28. 피고에게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결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30

에 취득하는 재산(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의 취득)"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감면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3) 원고는 2016. 8. 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 8. 11. 피고에게 잔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피고는 위 잔금완납일인 2016. 8. 11.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세액이 0원으로 기재된 영수필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 9. 21. 원고의 법인세 · 취득세 · 재산세 · 관세 등을 감면대상 조세로 결정하였다.

(5) 피고 측은 2016. 12.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호텔건립사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6 내지 16, 29,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감면요건 충족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조세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30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하면, 조세감면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결정을 한 날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의미에 부합하는 점, ②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본문, 제8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1조의2 제4항 소정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위 감면신청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조세감면결정은 조세감면 여부를 좌우하는 필수조건이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은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로서 신고를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후 그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기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공제하도록 하는데, 사업개시일 전에도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이는 외국인임에도 감면결정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이례적으로 조세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바, 감면결정의 존부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은 부당한 점, ③ 세법규정은 획일적 기준에 따라 정해짐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는지 여부라는 불분명한 기준에 따름은 부적절한 점(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30

라는 점, 피고 측이 적극적으로 호텔건축사업에 참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취득세는 '과세행위에 부과하는 일종의 유통세'임에도, 취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았다가, 후일 만약 감면결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과세대상으로 소급해서 인정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④ 이 사건 토지의 거래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이자 조세부과권자인 피고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예외적이고 우연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조세감면규정을 사안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5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측은 원고와 함께 장기간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원고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30

러한 일련의 협의결과 및 조세감면 검토결과로서 이 사건 토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는 재산(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이라고 기재한 이 사건 감면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감면확인서 등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있은 다음에 발급된 것이므로, 피고 측이 사전에 공적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함으로써 투자유지를 하겠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인바, 피고 측의 공적견해 표명이 사전에 있었고, 그 결과로서 이 사건 감면확인서 및 감면영수증, 보도자료 등으로 감면사실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반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 측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상 건축물 축조 허용기준은 매매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기에 사법상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본 원고는 매매대금의 1/2만 납부하면 호텔건축이 가능하게 된다고 예상하였음에도, 피고 측이 갑자기 매매대금의 완납을 요구하자 원고는 본래 2019. 9.까지인 잔금을 서둘러 납부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는 피고 측이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거래조건을 추가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서둘러 납부해야만 했다고 보이는 점, ④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확인서는 매매계약서에 매매조건을 충실하게 포함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원고 측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보게 되자 당초 계약조건 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당연히 누리게 될 조세상의 혜택을 확인해준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순히 피고 측이 과실로 이 사건 감면확인서를 발급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토지의 거래는 원고와 제3자의 거래가 아닌 원고가 과세권자이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한 거래인바, 원고로서는 피고가 감면을 표명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의 선후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예상할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30

없었다고 보이는 점, 감면신청일자, 감면결정일자 및 이 사건 토지 취득일자의 인접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당사자이자 과세권자의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이 사전 전제가 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과세권자 소유의 토지가 거래대상으로 사전에 확고하게 특정되어 있었고 일련의 과정상 감면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장애가 없었던바, 원고가 감면결정 전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요건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 측의 감면확인이라는 공적견해표명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